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. 4. 4 선고 2018가단10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]

---

## 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18. 3. 21.

판결 선고2018. 4. 4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답 1,118㎡ 및 D 답 49㎡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85. 11. 15. 접수 제263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조영진

별지